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주 택 건 설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차량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심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주차단위구획 수의 일정 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27조제1항)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토록 개정('23.12.5.)하였으나, 해당 완화 규정을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안 제27조제2항)하기 위하여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종전의 주차대수 기준 완화 규정을 폐지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27조제2항)

1)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유차량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되는 주차단위구획 1개당 일반차량 3.5대만큼의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완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
의 제2항) 중 “각 호”를 “각 호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
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제2호 중 “제3호”
를 각각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
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
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
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② 도시형 생활주택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구획을 설치(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대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가 이미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27조(주차장)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4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 ----- ----- ----- ----- -----. <u>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u>
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서 건설하는 소형 주택일
것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
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
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
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
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
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
대할 것.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
는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나. 「주차장법」에 따른 주
차단위구획의 총 수의 100
분의 20 이상을 「도시교
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
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
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
는 완화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해 사용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

<삭 제>

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
는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
는 완화

<신 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
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② 도시형 생활주택에 「도시교
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구획을 설치
(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
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대
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대수(소수점 이하
는 버린다)가 이미 설치된 것으
로 본다.

③ --- 각 호 및 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소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3. 4. (생략)

⑤ · ⑥ (생략)

[illegible]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2항

1. (현행과 같음)

2. ----- 제2항 -----

3. · 4.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 제7항-----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 - 3369